

## 임직원의료비지원규정

규정 1983. 9. 27  
 발령 제18호  
 개정 2012. 2. 20  
 개정 2015. 9. 1 제181호  
 개정 2016. 1. 1 제186호  
 개정 2017. 4. 1 제197호  
 개정 2018. 1. 1 제210호  
 개정 2019. 1. 1 제22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월의료원 정관 제82조 및 영월의료원 의료수가 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의료원 임직원의 안전보전에 관한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9.1.)

제2조(적용대상)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2012.2.20.)

- ① 이사 및 감사
- ② 영월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·직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③ 영월의료원 수가 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되는 자

제3조(지원범위) 원장은 제2조 각 항에 해당되는 자가 영월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.(개정 2017.4.1.)

- ① 외래 및 입원진료 ————— 본인 부담금의 50% 지원
- ② 진료비 지원 중 비급여항목은 원가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
- ③ 장례식장 ————— 시설사용료, 염습료, 장의용품의 50% 지원

제4조(신청방법)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진료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진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17.4.1>

제5조(적용심사) 원장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진료신청서를 받으면 적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4.1.>

제6조(지원제제) 원장은 적용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지원한 의료비 전액을 회수하고 2년간 의료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7.4.1.>

제7조(작성관리) 원무과장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거 환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4.1., 2018.1.1>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개정 2012.02.2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개정 2015. 9. 1 규정 제18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개정 2016. 1. 1 규정 제18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개정 2017. 4. 1 규정 제19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